

미래를 바꾸는 힘! **고양**

차 례

고 시

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6-4호	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 고시	1
고양시 고시 제2026-72호	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제1호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	2
고양시 고시 제2026-76호	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	5
고양시 고시 제2026-77호	도로명주소 고시	15
고양시 고시 제2026-81호	도로구간 변경 고시	17

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6-4호

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영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6일

고양시 일산동구청장



1. 책임수행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(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)
2.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: 지영1지구
3. 사업위치 및 면적
 - 일산동구 지영동 65-2번지 일원 105필지 / 56,470㎡
4. 위탁 업무 :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
5. 기타 :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조사·측량 수행

고양시 고시 제2026-72호

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제1호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일산동구 백석동 1143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제1호) 사업에 대하여 일산복합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등의 사유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6일

고 양 시 장

1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3-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1호) 사업
- 명칭 : 일산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사업을 위한 해체공사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 고
결정	1	전기공급설비	백석동 1143-1 일원	156,480	건고제112호 1995. 3. 27.	
금회 시행	1	전기공급설비	백석동 1143-1	148,381	-	10개소 해체공사

- 건축 면적 : 7,773.8㎡ 감소 (26.1%), 연면적 10,824.1㎡ 감소(22.9%)

구분	내용			
대지면적(㎡)	150,592.7(일산동구 백석동 1143-1번지)			
건축·공작물 현황	건축물대장 기준	기정자료 재구축	변경내용	해체공사 후
건축물 수	43개소	40개소	감) 10개소	30개소
공작물 수	9개소	6개소	-	6개소
건축면적(㎡)	30,186.205	29,784.655	감) 7,773.830	22,010.825
건축연면적(㎡)	47,635.015	47,233.455	감) 10,824.060	36,409.395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한국동서발전(주) 대표이사 권명호
- 주소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6. 12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: “별첨”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: “바”항과 동일

아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“라, 바”항과 같음

2. 관계도면 : “계재생략”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[토지조서]

번호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
	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
합계					158,691.7	156,480.0	-	-	
1	기정	백석동	1143-1	대	150,592.7	148,381.0	한국 동서발전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	
2	기정	백석동	1143-3	대	8,099.0	8,099.0	한국 전력공사	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	

고양시 고시 제2026 - 76호

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3. 6.

고 양 시 장

I. 산업단지 개요

가. 단 지 명 : 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(고양일산테크노밸리)

나. 관리기관 : 고양시장(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)

다. 조성목적

- (1) 4차 산업혁명 대비 경기북부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
- (2)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기여, 미래 자족도시 구현
- (3)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

라. 위치 및 면적

- (1) 위 치 :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82번지 일원
- (2)면 적 : 100,000㎡
- (3)사업시행자 : 경기도·고양시, 경기주택도시공사·고양도시관리공사
- (4)개발방법 : 공영개발
- (5)사업기간 : 승인고시일 ~ 2026. 12. 31.(공사완료공고일)

마. 추진경위

- (1) 2019. 12. 27. :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(고양시 고시 제2019-409호)
- (2) 2020. 05. 01. :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
(경기도, 고양시, 경기주택도시공사, 고양도시관리공사)
- (3) 2020. 05. 21. : 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

(경기도 고시 제2020-5108호)

(4) 2020. 07. 09. : 구역지정(1차변경) 및 개발계획(1차변경), 실시계획 인가 신청

(5) 2021. 07. 27. :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

(6) 2021. 08. 31. : 구역지정(1차변경) 및 개발계획(1차변경)수립, 실시계획 승인

(고양시 고시 제2021-315호,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)

(7) 2021. 12. 31. : 지형도면 고시(고양시 고시 제2021-511호)

(8) 2022. 11. 30. :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(2차변경), 실시계획(1차변경) 인가 신청

(9) 2023. 02. 10. :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(2차변경), 실시계획(1차변경) 인가 고시

(고양시 고시 제2023-69호)

(10) 2023. 04. 28. : 공사착공

(11) 2024. 04 .23. : 구역지정(2차변경) 및 개발계획(3차변경), 실시계획(2차변경)
인가 신청(12) 2025. 06. 20. : 구역지정(2차변경) 및 개발계획(3차변경), 실시계획(2차변경)
인가 고시(고양시 고시 제2025-177호)

바. 분양계획

구분		총면적	분양대상면적(㎡)					사업 시행자
			합계	분양	미분양			
					소계	조성	조성중	
합계		100,000	78,310	-	78,310	-	78,310	경기도, 고양시, 경기주택 도시공사. 고양도시 관리공사
산업시설구역 (첨단제조시설)		75,735	75,735	-	75,735	-	75,735	
공공시설 구역	소계	19,255	2,575	-	2,575	-	2,575	
	도로	16,680	-	-	-	-	-	
	주차장	2,575	2,575	-	2,575	-	2,575	
녹지구역	소계	5,010	-	-	-	-	-	
	녹지	5,010	-	-	-	-	-	

사. 입지 여건

시설명	규모 및 용량	조성 기간	시행기관
도로	○ 일반도로(5개 노선) - 중로1류(1개 노선, L=262m, B=22.9~29.4m) - 중로2류(3개 노선, L=735m, B=17.5m) - 소로2류(1개 노선, L=111m, B=5.5~8m)	2021 ~2026	경기도, 고양시, 경기주택도시공사, 고양도시관리공사
공간시설	○ 녹지 - 완충녹지 2개소 : 1,790㎡ - 경관녹지 1개소 : 3,220㎡	2021 ~2026	
용수	○ 생활용수 : 331㎥/일	2021 ~2026	
전력	○ 수요량 - 설비용량 - 8,473kVA - 최대부하 - 6,355kW	2021 ~2026	한국전력공사
통신	○ 수요량 : 1,515회선	2021 ~2026	-
열수요	○ 수요량 : 127,292Gcal/년	2021 ~2026	서울도시가스(주)
오폐수처리(㎥/일)	○ 산업폐수 : 0 - 폐수발생가능성 업체는 입주 제한 ○ 생활오수 : 295㎥/일	2021 ~2026	일산공공 하수처리시설

II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

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으로 하되,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은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한다.

나. 기본방향

- (1) 합리적인 업종 배치와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
- (2) 입주업체의 적극적인 지원활동 및 관리업무 전문화 제고

다.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

(1) 용도별구역 면적
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100,000	100.0	-
산업시설구역	첨단제조시설	75,735	75.7	분양예정
공공시설구역	도 로	16,680	16.7	관리청 무상귀속
	주차장	2,575	2.6	분양예정 1개소
녹지구역	녹 지	5,010	5.0	관리청 무상귀속 (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)

라. 입주관리계획

(1) 입주대상 업종

구분		입주 대상 업종	비고
첨단 업종	C. 제조업	17.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	주1)
		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제외	
		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	
		22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	
		24. 1차금속제조업	
		25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
		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
		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	
		28. 전기장비제조업	
		29.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	
		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	
		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

※ 주1)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(C17)의 경우 IT 융복합의 산업화를 실현하는 기능성 특수종이의 개발이나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연구개발되는 등 다양한 섬유를 원재료로 하는 하이테크(High Tech) 소재를 만드는 산업에 한하여 입주 가능

※ 중분류 C20 ~ C22, C24 ~ C31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」 시행규칙 제15조 **별표5(첨단업종)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**

※ 부대시설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한함.(다만, 기숙사 불가)

(2) 입주제한업종 사항

○ 「환경영향평가」 협의 내용에 따라 **폐수발생가능성 업체는 입주를 제한함.**

※ 폐수를 위탁처리하여 무방류를 하는 업체인 경우 폐수발생가능성 업체에 해당

○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(동법 시행규칙 별표2)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적용기준(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)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체
-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(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)의 발생 농도가 배출허용기준(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)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체

(3) 입주자격

○ 산업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서 규정하는

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추고
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※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등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우선하여
용지를 공급 하도록 한다.

○ 공공시설구역(주차장)

-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허용 용도에 부합된 자
- 「주차장법」 및 고양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
실수요자

(4) 입주절차

○ 「산업집적법」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
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

- 제조업

-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→ 입주계약 적격업체 여부 결정 →
입주계약 통보 → 공장설립 완료신고 → 공장등록

마.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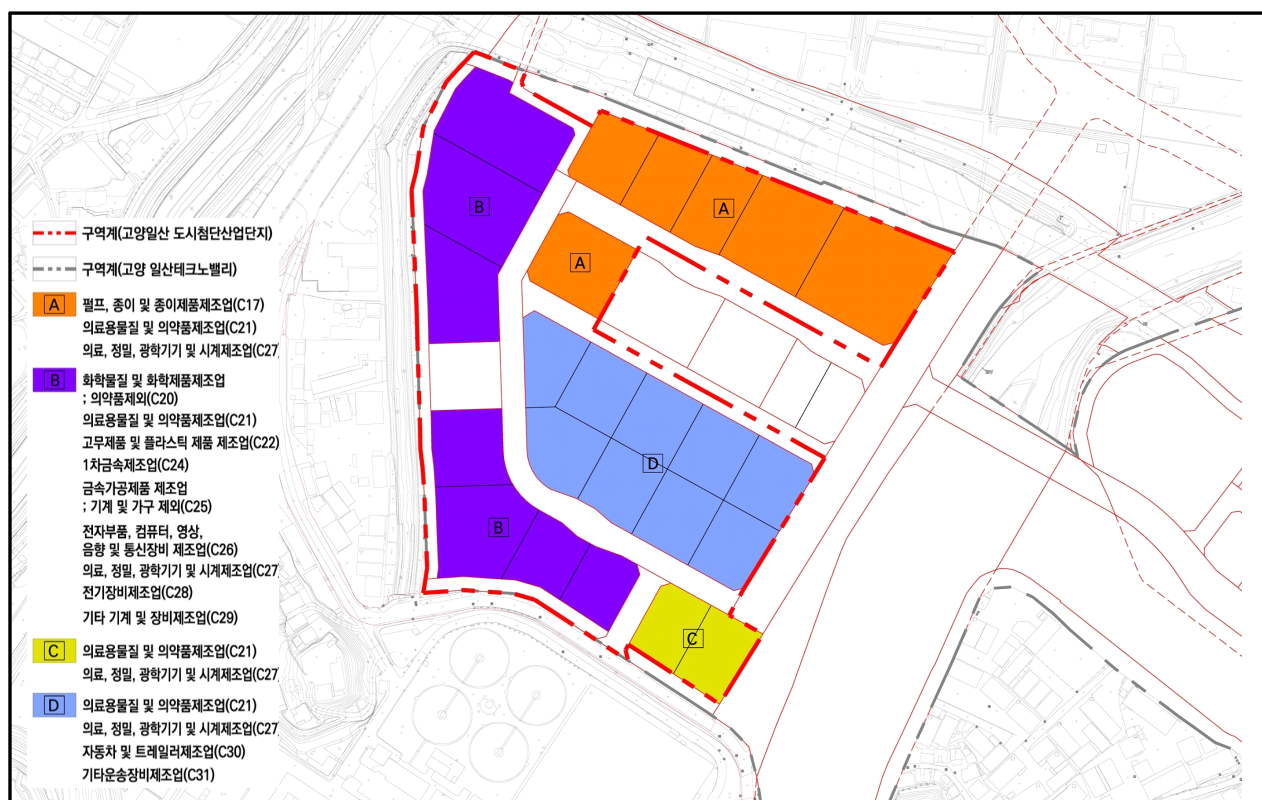
(1) 배치기준

-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
- 환경적(소음 및 진동, 수질, 대기 및 악취) 측면을 고려한 배치
- 주변 환경, 종사자들의 생활 환경적 측면, 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한 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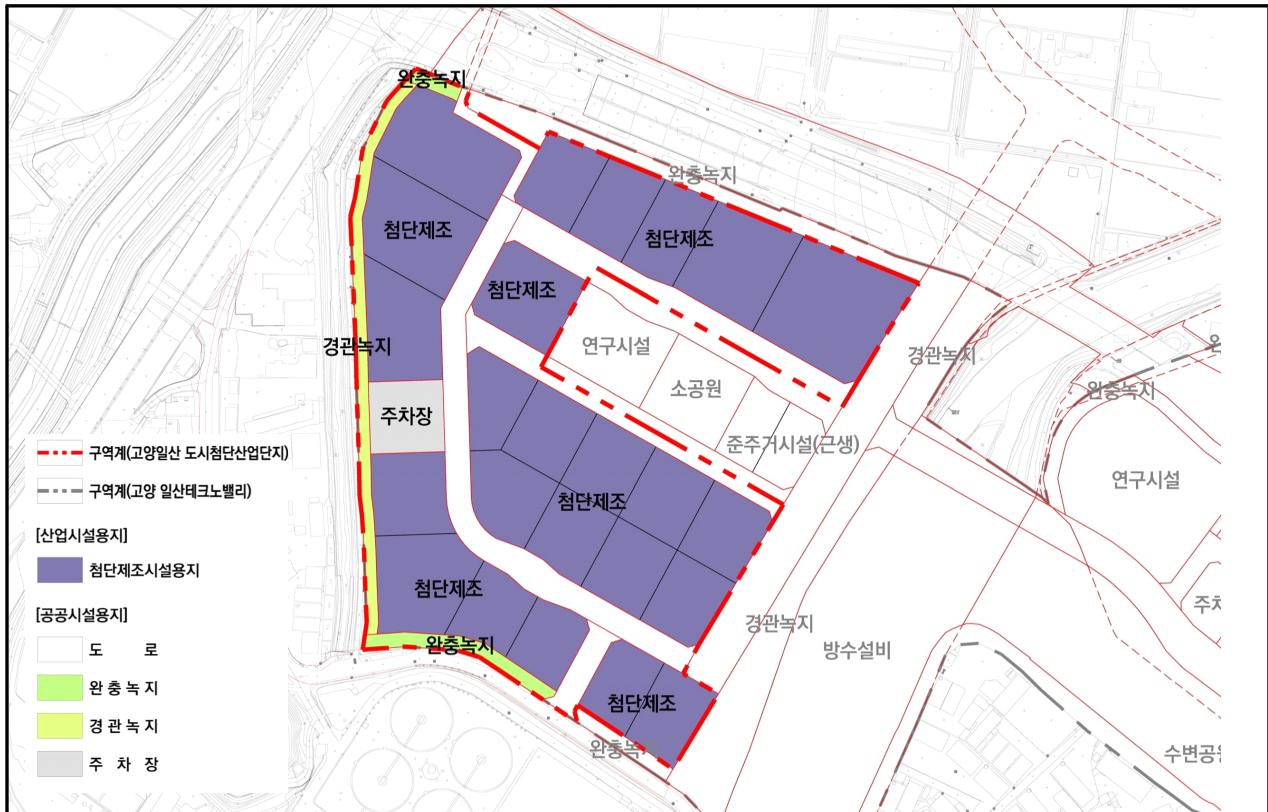
구 분		획지수	계획면적 (㎡)	비율(%)	비고
계		24	75,735	100.0	
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	(C17)	6	22,650	29.9	A구역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	(C21)				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	(C27)			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제외	(C20)	7	25,369	33.5	B구역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	(C21)				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	(C22)				
1차금속제조업	(C24)			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	(C25)				
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(C26)				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	(C27)				
전기장비제조업	(C28)				
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	(C29)				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	(C21)	2	4,660	6.2	C구역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	(C27)				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	(C21)	9	23,056	30.4	D구역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	(C27)				
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	(C30)				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(C31)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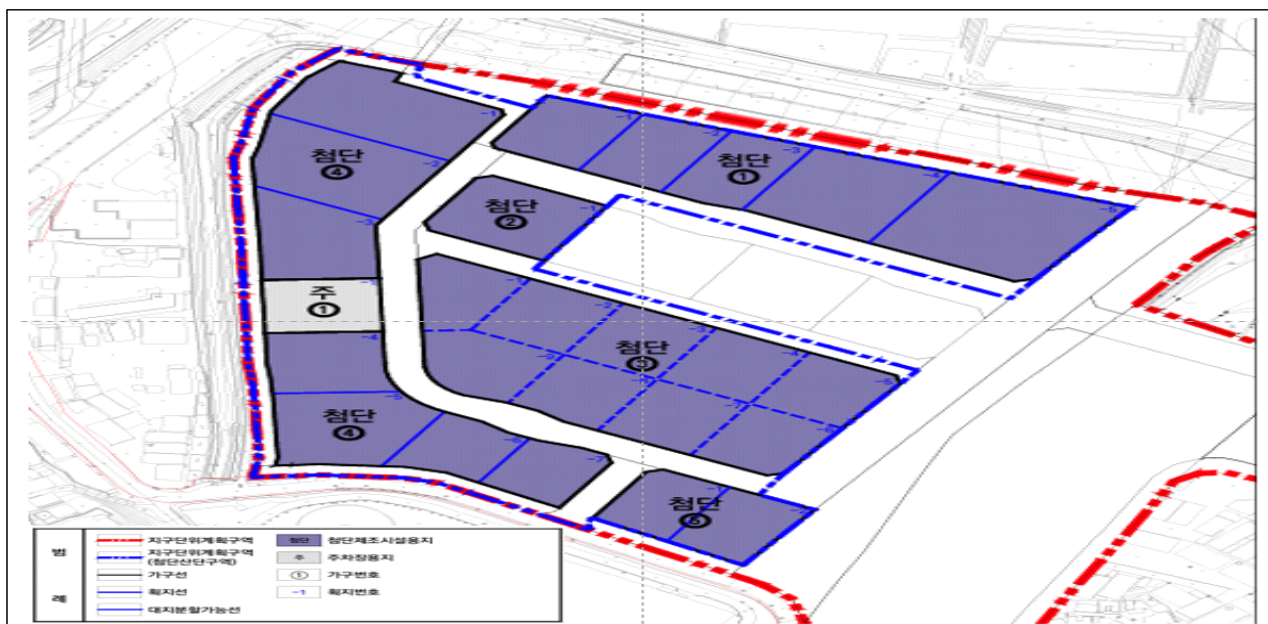
(2) 업종 배치계획도



(3) 토지이용계획도



(4)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

(5)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(가) 산업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
-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, 높이(층)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.

구분	건폐율	용적률	높이	비 고
첨단제조시설	60% 이하	380% 이하	7층 이하	

※ 건축물 최고 높이는 층수 및 아래 표에 따른 해발고도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.

- 건축물 최고 높이에 관한 사항(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,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구분	부지별		용도지역	층수 (층)	계획 높이 (해발고도)(m)
산업시설 용지	첨단제조시설용지	첨단①	준공업지역	7	49.1
		첨단②			48.4
		첨단③			49.6
		첨단④			49.2
		첨단⑤			48.6

※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 입주제한업종 제외

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태양광에너지 한함)는 적합한 건축물·주차장시설의 옥외 부분과 기타 유휴부지에 설치

바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

(1) 에너지 효율화

- 건축물의 단열재 및 창호는 고효율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장한다.
-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.
-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에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를 권장한다.
- 저탄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·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한다.
-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(환기장치, 반송장치, 자동제어시스템 등 모든 기계설비) 및 전기설비(전동기, 변압기, 승강기 조명기기 등 모든 전기설비)는 고효율 기자재 적용을 권장한다.

(2) 신·재생에너지의 활용

-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지향한다.
- 사업지구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에는 신·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지열

등)의 적용을 적극 권장한다.

- 신·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형상, 대지, 자연환경 등의 입지특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한다.

사. 사후관리계획

(1) 목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산업단지관리지침, 도시첨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·효율적 관리 도모

(2) 분양용지관리

- 산업단지 내 분양 용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, 본 산업단지 「관리기본계획」, 「지구단위계획」 등에 따라 관리한다.
-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 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라야 한다.
-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입주계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.
-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른다.
-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법정기간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수, 준공 불가능, 준공 후 사업 미착수, 사업의 휴업 등이 있는 때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1조,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지 환수 및 입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
(3) 환경관리

입주기업체는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.

(4) 안전관리

-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,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.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입주기업은 재해 발생 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

(5) 기반시설지원

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

아.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

- 본 관리기본계획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, 「고양일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(고양시 고시)」에 따르며,
-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법률을 따라 운영한다.

고양시 고시 제2026 - 7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6일

고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229-56 등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	
별 지 참 조				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변경일	변경사유
별 지 참 조				
폐지 도로명주소		폐지일자	폐지사유	
별 지 참 조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(☎8075-3096~9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-

- 도로명주소는 2026. 3. 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,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						
연번	종 전 주 소	도 로 명 주 소	도로명주소고시일	도로명고시일	부 여 사 유	비 고
1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02-118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229-56	2026-03-06	2010-01-26	향향-대화간 도로로 한 자석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	
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31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12-12	2026-03-06	2000-07-27	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60-8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82	2026-03-06	2009-07-10	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바라는 뜻	
4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63-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48-3	2026-03-06	2010-01-26	대양로 시점에서 2850m에 위치한 도로	
5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3-39, 361-49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2로59번길 2	2026-03-06	2011-07-15	덕이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6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52-9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313	2026-03-06	2009-09-11	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						
연번	종 전 주 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1		해 당 없 음				
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						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폐지일	폐지 사유	법정동	비 고	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48-3	2026-03-03	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멸실	고양동		

고양시 고시 제2026 - 81호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6일

고 양 시 장

1. 고 시 일 : 2026. 3. 6.(금)
2. 고시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
※붙임(조서 및 도면) 참조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(☎031-8075-30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) ‘법곶길’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

도로명	관할 구역	구분	도로구간		길이(m)	폭(m)	기초번호 간격(m)	기초번호	변경 사유	고시일	효력발생일	
			기점	종점								
법곶길 (1차종속)	구산동	도로구간 변경	변경 전	구산동 1334	구산동 1338-1	107	4	10	632-1(2) → 632-21(22)	도로구간 변경 및 연장	2026. 3. 6.	2026. 3. 6.
			변경 후	구산동 1318-2	구산동 1341-1	250	4	10	632-1(2) → 632-49(50)			
도로구간 변경 도면												
변경 전						변경 후						

※ 『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』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.